

제 1753 호
1993. 7. 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원 중
편집인 : 공 보 관 김 태 수
전 화 : 731-8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3003 호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제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제 3004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증개정조례 3

제 3005 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 4

제 3006 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 11

제 3007 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제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11

(이면계속)

| | | | | | | | | | |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함께하는 고통분담 함께웃는 밝은내일”

0758

제 3008 호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1

제 3009 호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12

제 3010 호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12

제 3011 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3

제 3012 호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3

제 3013 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4

제 3014 호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5

제 3015 호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의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15

제 3016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16

제 3017 호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18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03호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동 부동산을 계속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0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의 일반적 5급란 정원내용 중 "지방기계기과,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를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하고, 동 일반적 6급란 정원내용 중 "지방행정주사 15"를 "지방행정주사 16"으로 하며, "지방통신기사"를 "지방통신주사"로 하고, "지방임업기사 1"을 삭제한다. 동 일반적 7급란 정원내용 중 "지방건축기사보"를 "지방건축주사보"로 하고, "지방기계기사보 또는 지방전기기사보"를 "지방기계주사보 또는 지방전기주사보"로 하며, 동 별정직 7급란 정원내용 중 "영사기사"를 "영화기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㉞

◎서울특별시조례제3005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완화)

주차장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
도로의 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 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 7.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 8.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하역주차구간에는 제9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예의 제공) ①법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 내의 공지로서 주차대수규모가 5대 이상이어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 배치도(축척 600분의 1 이상 일 것)
2. 반경 100미터 이내의 유·출입 동선처리도면(축척 600분의 1 이상일 것)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제14조의4(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등) ①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용자의 대상) ①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③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 용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2조(용자의 방법) ①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용자금의 지급절차 및 유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용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시장은 용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급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용자금의 반환) ①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1. 용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 2. 상환기간중에 노의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 3. 용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의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24조 중 제8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증지 및 폐지신고 "제6장 보칙"은 삭제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3의 라와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상이자

로서 동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별표 2〉의 단독주택란 중 "200제곱미터"를 "180제곱미터"로, "150제곱미터"를 "120제곱미터"로 하고, 공동주택란 중 "150제곱미터"를 "130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별표 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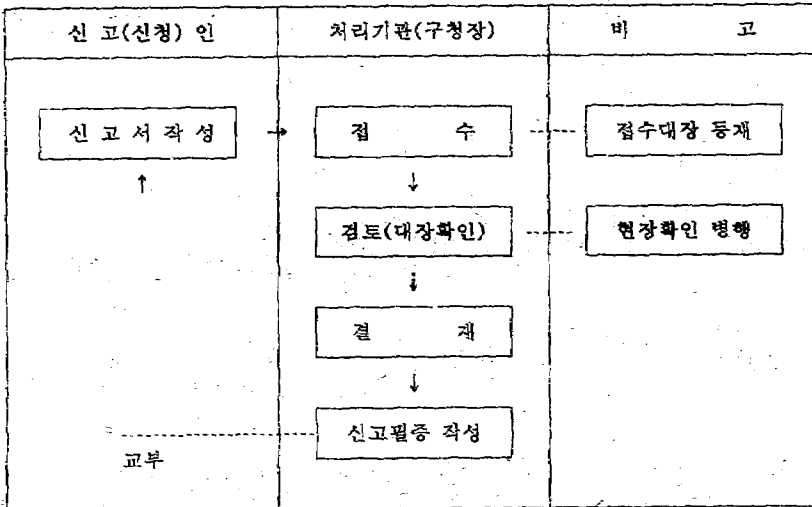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시설물 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의3 관련) | | | |
|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서 | | | 처리기간 5일 |
| 신 고 인 | (1) 성 명 | | (2) 주민등록 번호 |
| | (3) 주 소 | | (4) 전화번호 |
| 부설주차장 | (5) 명 칭 | | (6) 주차장의 형 태 |
| | (7) 위 치 | | (8) 규 모 (대 m) |
| | (9) 이용예정일 | | 00 |
| | | | 수수료 없 음 |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인) | | | |
| *구비서류 : 1. 주차시설 배치계획도(축척 600분의 1도 이상) 2. 반경 100m 이내 유출입동선 처리도면(축척 600분의 1도 이상) 구 청 장 귀하 | | | |
| 신고 제 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 | | |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19 년 월 일 구 청 장 (인) | | | |

※ 기재시 주의사항

1. (1)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3)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5)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6)란은 주차장별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7)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8)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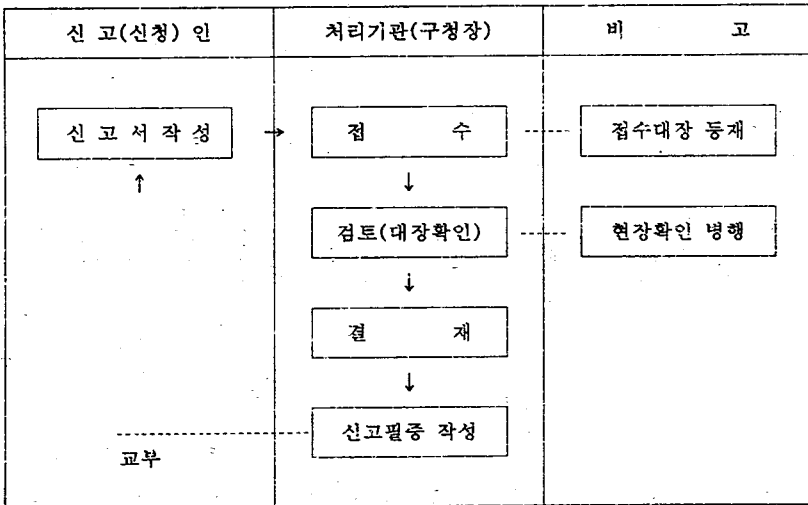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 | (제14조의4 관련) | |
|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input type="checkbox"/> 중지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폐지 | | | 처리기간 5일 |
| 신 고 인 | (1) 성 명 | (2) 주민등록 번호 | |
| |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
| 부설주차장 | (5) 명 칭 | (6) 주 차 장 의 형 태 | |
| | (7) 위 치 | (8) 규 모 (대 m ²) | |
| | (9) 공용신고번호 | (10)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 . . . |
| (11) <input type="checkbox"/> 이용중지 시설규모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 시설규모 | | 대 | (12)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
| (13) 이용중지 또는 폐지사유 | | | |
| | | | 수 수 료 없 음 |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인) | | | |
| 구 청 장 귀하 | | | |
| 신고 제 호 | | | |
|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input type="checkbox"/> 중지 신고필증 <input type="checkbox"/> 폐지 | | | |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폐지)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19 년 월 일 구 청 장 (인) | | | |

※ 기재시 주의사항

1. (1)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3)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5)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6)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물 구분 기재합니다.
5. (7)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8)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
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06호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연구” 다음에 “·감독
업무”를 추가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
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
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07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
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자(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
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도
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을 포함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사
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08호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
규정 제31조제1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수
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09호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유료도로 노선명, 징수구간 및 기간

| 노 선 명 | 징 수 구 간 | 징 수 기 간 |
|----------------|---|-----------------------------|
| 남 산 1 호 터 널 | 기점 : 중구 예관동 5-6 종점 : 용산구 한남동 산 10-1 | 1970. 8부터 1994. 12. 31까지 |
| 북 약 터 널 | 기점 : 종로구 평창동 산 6-1 종점 : 성북구 정릉동 산 37-1 | 1971. 7부터 1994. 12. 31까지 |
| 남 산 3 호 터 널 | 기점 : 중구 회현동 49 종점 : 용산구 용산동2가 5 | 1978. 1부터 1996. 12. 31까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10호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
 울특별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과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재좌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 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금전신탁으로 예탁하
 여야 하며 잔여분은 재해구호사업 충당금
 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예치 관
 리하되, 기금의 예치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신탁분 중
 100분의 30까지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 예탁하거나 국제 또
 는 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망·실종자 위로금 및 그 유족의 생
 제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의류 및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4. 비축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
 와 그 유지 관리비
5. 주택복구(주택복구비 및 침수주택수리
 비 등)

- 6.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 경비
- 7.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8.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제5조(구조기준) 재해구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관)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과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의 경우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훈령 제 572호 서울특별시재해구조사업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11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12호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제11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5호 중 “신천동 7번지 11호·7번지 8호·11번지 7호”를 “신천동 7번지 11호·11번지 8호·11번지 7호”로 한다.

제6호 중 “성내동 458번지”를 “길동 458번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13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

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하고, “이하 같다”이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등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 급 수 | 분 류 번 호 |
|--------------------|--|
| 3 급 |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
| 4 급 | 108, 109, 111, 112, 113, 504 |
| 5 급 | 25, 26, 28, 29, 41, 73, 77, 92, 505 |
| 6 급 (복합 호수자) |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
| |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
| 비 고 |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장 예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14호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대
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
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15호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
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세계박람회(이
하 "대전엑스포 '93"이라 한다)에 참가하
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
영요원 등(이하 "외국참가자"라 한다)이
대전엑스포 '93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
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자동차로서 대전엑스포 '93 참가를 목적
으로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동차와
대전엑스포 '93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
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공용자동차
2.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내국인을 제외한다)용 자동차

제3조(과세면제) 외국참가자가 취득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사무처리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면제신청) ①외국참가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외국참가자가 이미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3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
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16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
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
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
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
업"이라 한다)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
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및 융자상
환금 등

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내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
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과 중소기업 구
조개선자금 계정(이하 "구조개선자금"이
라 한다)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
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
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
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
차 등의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
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
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용

제8조(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
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
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한다.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 특화산업 생산업체
3. 공업단지 입주업체
4.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참여업체
5.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 업체
6. 기타 시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9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업체 소재지 관할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운전자금의 융자대상선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운전자금의 융자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장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영

제12조(융자대상) 구조개선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체
2. 정보화 추진 중소기업체
3.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체

4. 자동화·정보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체
5.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체
6.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체
7. 기타 시장이 성장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제13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구조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절차 및 융자조건을 결정한다.

②구조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구조개선자금의 융자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 등 추진에 관한 전문 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법인·단체 등에 구조개선자금의 융자 대상선정 등 융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계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접수·처리에 관한 권한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에 관한 권한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3. 7. 3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17호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의 출연금
3.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재산
4.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지도육성

-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 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도
 - 4. 전통문화 선양
 -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조장
 -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 8. 노인회보 발간
 - 9.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시장,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 2.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장
 - 3. 노인복지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 계획

-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위원은 회의의 안전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